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신지선

전화 053-570-4420 / 팩스 053-570-4242

보도자료

2022. 9. 16.(금)

제 목

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던져 살해한 친부모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□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, 어제(9. 15.) 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영아를 무려 3일간 방치하여 살해한 부모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극 보완수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하여 직접구속 후 구속기소하였고, 특히 아동학대살해 피고인 모는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으나 검거하여 직접구속 후 구속기소하였음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 : A(여, 22세, 모), B(남, 22세, 부)

● 공소사실의 요지

가. 피고인 A(모)

- '22. 5. 28. 23:30경 남편인 B와 말다툼하다 피해 아동(2022. 3.생, 생후 2개월)을

그대로 방바닥으로 던져 피해 아동이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살해할 의사로 그대로 방치한 후 '22. 5. 30. 01:1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살해)]

나. 피고인 B(부)

- 위와 같이 아내인 A가 피해 아동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[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

II

주요 수사 경과

- '22. 5. 30. 피해 아동 사망으로 변사 접수(사망원인 미상) / 부검실시
 - ※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끔끔 앓고 있었음에도 사망할 때까지 방치하고,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 아동이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였음
 - ※ 부검의는, 피해 아동은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,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진술
- '22. 6. 24. 사경, 피고인 A(모) 구속영장 신청 / 법원 기각
 - ※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
- '22. 6. 24. 사경, 피고인 B(부)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불신청, 불구속 수사
- '22. 7. 25. 사경, 피고인들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
- '22. 8. 초순 당청,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여부, 여죄 확인을 위해 각 소지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실시
- '22. 8. 중순 당청, 피고인들 조사, 휴대전화 포렌직

※ 피고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, 피고인들이 본 건 범행 후 전혀 개선의 정이 없는 행태를 보인 사실 확인

- '22. 8. 29. 당청, 위와 같은 양형자료 적극 개선하면서 **사전구속영장 청구**
- '22. 8. 31. 법원, **피고인 B(부) 구속영장 발부**, 다만 **피고인 A(모)**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**도주**
- '22. 9. 1.~9. 2. 당청, 통신수사와 피고인 A(모)의 어머니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 A(모) 추적 후 검거, 구인장 집행
- '22. 9. 2. 오후 법원, **피고인 A(모)에 대한 구속영장발부**
- '22. 9. 5.~9. 15. 당청, 피고인들 및 관련자 조사 후 각 **구속기소**

III

수사결과 및 향후계획

- 피고인들은 친부모임에도 2개월 된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 아동이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끔찍 앓고 있음에도 부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, 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음
- 더욱이 피고인들은 본 건 범행 후 전혀 개선의 정이 없는 태도를 보였음
- 당청은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[피고인 A(모)]하여 피고인들을 직접 구속한 후 구속기소하였음
- 법원이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기각하여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아동학대살해·치사 사건을 검찰의 직접 수사로 실체를 확인하여 구속 후 기소한 사건[실제로 피고인 A(모)는 재청구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하였음]으로,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 적극 개선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할 예정☑